

공

고

○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45호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관보 게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김*미	412025200000005	328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1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	박*규	422015200000159	300왕**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3	박*숙	422017200000486	316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벌리2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4	이*선	492024200000374	재난해상309해*호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5	최*애	422018200000706	325현*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6	박*근	942025210002538	양**산5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7	박*근	942025210002539	양**산50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시장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8	(주)웨**종합 건설	942025210000989	웨**50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2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9	(주)웨**종합 건설	942025210000990	웨**502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2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10	(주)웨**종합 건설	942025210000991	웨**503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2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11	천*균	492024210001090	재난해상315하*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6. 9. 1.(화)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